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사무총장 박주현 변호사(010-5687-0926)
대 변 인 유정화 변호사(010-8500-8756)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사법제도 부정하고 반란군을 희생자로 미화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위헌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직후 국군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력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켜 국군과 경찰, 민간인 다수를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남로당 세포들이 침투한 14연대 2000여명은 여수·순천 등을 점령하면서 지역 좌익 세력과 함께 '제주도 출동 반대' '미군 즉시 철퇴' '인공(人共) 수립 만세' 같은 성명서를 여수 읍내 곳곳에 붙였다. 경찰관과 기관장, 우익 청년단원, 지역 유지 등을 집단 사살하기도 했다. 그 범죄의 잔혹성은 제주 4·3사건 초기 남로당이 저지른 잔혹성을 훨씬 능가했다. 정부는 군을 파견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반란군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란군 가담자와 그 피해자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2001년 헌법재판소도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관련해 '사건 발발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 간부, 군경과 가족, 선거 관여자를 살해한 자, 공공시설과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희생자로 보호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38).

그런데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희생자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범위에 들어간 수형자(受刑者)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반란 주모자나 가담자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별도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한 국가 사법제도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위헌적인 일이다. 이 부분 여순사건 특별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2021. 7.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